

# 의 정 정 보

---

2005 - 19 10. 25

## 목 차

---

I. 중앙기관 정보	1
II. 타 시·도 의회 동향	3
III. 새로 개정된 법령	4
<b>부 록</b> : 행복한 책 읽기	7

# I. 중앙기관 정보

## ① 지방공무원의 직렬 통합, 개방형직위의 확대 등 추진

- 행자부는 지난 10월 6일 지방공무원의 인사제도를 공정성과 개방성을 확대하는 쪽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.
- 지방인사위원회가 제3자적 중립적 입장에서 지방인사의 합리적 운영을 담보하는 실질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으로
  - 현재는 부단체장이 당연직으로 되어있는 위원장을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고
  - 위원의 신분보장 규정을 신설하며 인사에 관한 자료제출의 요구와 인사운영에 관한 권고권한 등을 부여하게 된다.
- 또한 우수인재의 확보를 통한 자치단체의 인적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방형직위의 지정대상을 시·도의 5급 이상에서 시·군·구 6급이상 직위로 확대하고
  - 일정 직위에 대해 공무원 중 희망자를 공개 모집하는 직위공모제를 도입하며
  - 지방 5급 및 7급 공채에 의한 인력 충원을 확대하기 위해 행정 자치부장관의 결원보충 조정권을 강화할 예정이다.
- 아울러 지방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도의 4급이하 공무원 및 시군구의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기간 근무 후 전문

분야를 지정하고 승진과 전보가 해당 분야별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전문분야별 보직관리가 의무화된다.

- 특히, 지방공무원의 직렬을 과감히 통합하여 고위직 공무원의 종합적인 정책능력을 제고하고, 능력과 실적에 의한 인재의 활용과 이공계 분야 공직진출의 확대 등을 도모하게 된다.
  - 현재 행정 및 14개 기술 직렬로 구분되어 있는 지방 2급 및 3급을 직렬구분을 폐지하여 지방이사관과 지방부이사관으로 통합하고
  - 지방4급은 과장직위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18개 직렬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8개 직렬로 통합한다.
- 그밖에 인력의 탄력적인 활용을 위하여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부분 근무공무원제도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가 있을 경우 소속 공무원을 업무대행자로 지정하여 업무대행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,
  - 명예 퇴직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계급별 승진소요 최저 연수의 1/2 이상 재직시 허용하던 명예퇴직자의 특별승진요건을 계급별 1년이상 재직시로 완화하는 것 등을 개선내용으로 하고 있다.
- 행자부에서는 이번에 입법예고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심사·의결을 받는 등 법령 개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.

## II. 타 시·도 의회 동향

### ① 대구시의회,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안 발의

- 대구시광역시의회는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한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하기로 하였다.
-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▲ 탈북자의 정착지원과 관련된 사업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▲ 대구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협의회를 두고 이곳에서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지원사업에 대한 협의·조정 및 정착지원행정의 민·관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공무원·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·단체에 대하여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.
- 시의회는 북한 이탈주민들이 우리사회에 정착하여 건실한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으나, 아직까지 성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탈북자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.

### ② 광주시의회, 초등학생 모의의회 개최

- 광주광역시의회는 초등학생들이 직접 의정활동을 체험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모의의회를 지난 10월 20일 본회의장에서 개최했다.
- 이번 모의의회는 초등학생 100명이 참가하여 「독도를 지키자」 등 5분 자유발언과 「어린이들의 올바른 인터넷 사용을 위한 조례」안을 처리했다.

## III. 새로 개정된 법령

## ① 지자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(시행 '05.10.20)

- 종전의 실·국 및 과·담당관 체계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칭을 실·국은 본부·단·부로, 과·담당관은 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,
  - 1개의 직위에는 1개의 직급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던 것을 명칭을 달리하여 정한 경우에는 직근 하위직급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다양화함
- 행자부장관이 보유한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책정에 관한 권한을 지방분권 및 자치조직권 강화를 위하여 지방에 이양
  - 시·도·특별시 자치구의 4급상당 이상 별정직공무원의 정원 또는 시·군·광역시 자치구의 5급상당 이상 별정직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하거나 별정직 외의 정원으로 변경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자부장관의 승인 또는 협의를 폐지
- '98년 구조조정 시에 부읍·면장제가 폐지되었으나, 현장행정·종합행정이라는 읍·면행정의 특성상 읍·면장의 출장이 많아 읍·면장 부재시 효율적인 업무처리에 지장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그동안 부활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됨
  - 따라서 읍·면에 부읍·면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, 구조조정 성과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신규 증원없이 총무 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겸임

## ② 소방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 (시행 '05.10.20)

- 불을 사용하는 설비에 대한 세부관리기준을 특별시·광역시

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관리  
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,

- 석탄·목탄류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특수가연물  
저장 및 취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석탄 등 발전  
연료를 충분히 비축할 수 있도록 함
- 보일러·난로 등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을 특별  
시·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여 운영
- 석탄·목탄류를 현행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기준을 적용  
하여 발전(發電)용으로 저장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동 연료의  
재고량 축소로 인하여 발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
- 따라서 발전소에 화재방지를 위한 자동살수장치 시스템이  
갖추어져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석탄·목탄류를 발전용으로  
저장하는 경우에는 특수가연물 저장 및 취급기준을 적용  
하지 아니하도록 함

### ③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(시행 '05.10.7)

- 서민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 
건설 임대주택사업을 하는 법인 외에 매입 임대주택사업을  
하는 법인이 취득·등기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도 등록세  
중과세(일반세율의 100분의 300)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되,
  - 주택거래 신고지역에서 취득·등기하는 매입 임대주택에  
대하여는 중과세 함

### ④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·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(시행 '05.10.7)

- 지하공공보도시설은 보행교통을 지하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

는 도심 및 부도심지역과 철도역·지하철역 또는 여객자동차 정류장이 있는 지역 등에 설치하되, 유수지의 집수구역 안에 있는 침수가능지역인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함

- 지하공공보도시설 설치시 지하보행로는 이용자의 편의가 확보되고, 긴급시 피난 및 장애인 등 보행인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
  - 지하보행로의 너비는 최소 6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고 천장 높이는 바닥에서 3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는 등 지하보행로의 설치기준을 정함
- 지하도상가에 설치하는 점포의 총면적이 지하보행로의 면적과 지하광장의 면적을 합한 면적 이하로 설치하도록 하고,
  - 지하도 상가에 설치하는 점포의 한쪽 면은 지하보행로에 3m 이상 접하도록 하는 등 지하도상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을 정함
-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진열대·안내표지·광고물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지하공공보도시설의 내부마감재 및 배관 등 설비의 보온재는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함